문서번호	마을민주주의과-2397
결재일자	2016.4.2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주민참여담당		기획경제무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양근	박해열	한재헌	이용식	김병환	04/20 김 영배
협 조	정무보좌관 마을기획담	당	윤 <i>정</i> 임정		

201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2016. 4.

기 획 경 제 국 (마을민주주의과)

〈목 차〉

│. 추 진 근 거	•••••	1
Ⅱ. 추 진 방 향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1
□. 추 진 성 과	••••••	2
V. 문제점 및 개선방안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3
∨. 운 영 개 요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5
VI . 세부 추진계획		
1.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9
2.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심사	••••••	10
3. 주민참여예산 총회 (주민투표)	••••••	15
4. 타운홀미팅 (최종결정)	••••••	16
5.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17
6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	•••••	18
7. 교육 및 홍보	••••••	20
8. 향후 일정	••••••	21
VⅢ . 행 정 사 항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22

- 주민이 직접 꾸리는 성북 살림살이 -201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그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을 확대 도입하는 등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 · 대표성을 강화한 보다 성숙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□ 지방재정법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
- □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

Ⅱ 추진 방향

- □ (마을민주주의 구체적 구현)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 하고 해결해 가는 민주적 질서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구축
 - ⇒ 성북구 인구의 3% 이상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
- □ (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확산) 참여예산위원 위촉시 '무작위 추출' 방식을 도입하는 등 '추첨제 민주주의 방식' 도입 확대
 - ⇒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'추첨제' 도입하여 민주성 대표성 증대
- □ (작은 모임들의 활성화)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내 이웃과 소소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동네회의 개최 강화

Ⅲ 추진 성과

□ 마을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

- 주민참여의 질적 향상·양적 확대로 마을민주주의 기반 조성
 - (질적향상) 주민총회에 타운홀미팅 방식을 도입하고 이 중 5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'추첨민주주의 방식' 도입
 - (양적확대) 13,776명 (주민의 3.4%)이 투표 참여, 어느 때보다 많은 주민이 정책결정권한 행사
- 동단위 권한을 확대하여 동단위에서 보다 많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 강화
 - (민주주의의 진화)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과 토론을 통하여 사업으로 반영하도록 참여예산제 전과정에 주민 참여하도록 개선
 - (동별 마을총회 실시)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

② 전국 최초 '무작위추출'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참여 보장

(위원 위촉 방법의 민주성 증대) 위원 모집시 공개모집 외에 무작위 추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주민이 활동할 수 있게 함

③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민주성 대표성 확보

- 동별 인구수에 맞는 위원 배분, 공개모집·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
- 여성, 장애인, 노인,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적극 영입
 - 여성의 참여율 58.3%로 어느 위원회보다 여성의 참여가 높음
 - 사회적약자 참여율 27.6%(장애인:3명 어르신:9명, 청소년: 1명)

④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편성

○ 우리구 : 57개 사업, 845,670천원 편성

○ 서울시 : 26개 사업, 2,684,400천원 확보 (4년 누적 자치구 1위)

1. 운영상의 문제점

- ⑤ 동단위 결정금액이 2천만원으로 동일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사업물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동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, 예산낭비 발생요인 상존
 - ⇒ 동별 상황에 따라 시급하고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
 좀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정
- ② 제안사업의 검토기간이 10일로 짧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드백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주민들의 환류과정(이의신청, 재검토 요청 등) 부족
 - ⇒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환류과정(이의신청 기간)을 도입하여 사업제안단계부터 밀도 있는 사업 검토 시행
- ③ 동별 마을총회 일정이 제각각으로 진행되어 참여예산총회의 홍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주민의 참여 저조
 - ⇒ 동단위·구단위 사업의 투표를 모두 동일하게 M보팅에서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 총회의 주민참여도 3% 이상 달성토록 유도
- ④ 동마을심사단의 경우 총회 상정을 위한 심사만 하고 별도의 역할이 없어 결과적으로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노출
 - ⇒ 동마을심사단 위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 외에 최종 결정된 사업까지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부여

2. 주요 개선사항

① 사업규모 확대 (9억원 → 12억원)

- ⇒ <mark>동단위 6억, 구단위 6억</mark> 결정한도액 전년대비 3억원 증액하여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의 예산 반영 증대
- 동단위사업: 2015년 4억원 → 2016년 6억원 ± a
 - 동별 최대 3천만원 이내
- \bigcirc 구단위사업: 2015년 5억원 \rightarrow 2016년 6억원 기준으로 진행
 - ※ 동단위사업 결정액에 따라 구단위사업 최종 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음

구 분	동단위사업	구단위사업
개 념	한 개동에 해당하는 사업	두 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가 2천만원이 초과되는 사업
 특 징	소규모 근린생활개선사업	광역사업, 정책제안제
기준액	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	사업비 2천만원 초과

②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

- ⇒ 작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의 제안을 유도하고 해당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
- 동단위사업 기준액 상향 조정: $1천5백만원 이하 \rightarrow 2천만원 이하$
- 마을심사단 성립 요건 변경: 심사건수 5건 → 심사건수 4건 이상
 - (기존) 재적 과반수의 위원이 출석하고 심사 대상 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에 마을심사단 성립함
 - (변경) 심사대상 건수가 4건 이상인 경우에 마을심사단 성립
- 동별 결정한도액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
 - \Rightarrow 2015년 2천만원 \rightarrow 2016년 제안 수에 따라 결정금액 차등
 - ▶ 동별 최종 배정액 = 마을심사단이 총회에 상정한 예산 총액의 80%

③ 평가결과 반영 사항 변경: 차등배분 → 인센티브 지급

⇒ 동별 예산 차등 배분보다 우수 동에 인센티브 지급이 보다 효과적

4 운영일정 조정

- 주민참여예산총회 일정: 10월 → 9월
 - ⇒ 동 행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10을 피하여 한 달 먼저 시행하여 주민참여예산총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함
- 사업제안, 심사과정을 서울시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
 - ⇒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성북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주민이 보다 더 용이하게 참여하기 위함
- 동단위 사업 투표 후 구단위 사업 투표 완료
 - ⇒ 한정된 결정금액(12억원)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
- 제안접수와 부서검토의 상시화 (제안사업의 즉각적인 피드백)
 - ⇒ 검토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아 세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

5 동마을심사단 운영 내실화

-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마을심사단에서 직접 모니터링 실시
 - ⇒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결정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제안대로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관리
- 마을심사단 임기제 도입: 1년, 1회 연임 가능

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

-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이외에 무작위 추출 방식 도입
-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먼저 운영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
- 위원 자격 기준 강화: 출석률이 50% 이하 위원 해촉
 - 연임기준: 출석률 50% 이상 위원만을 대상으로 함

Ⅴ 운영 개요

Ⅱ 운영규모: 12억원

- 구단위사업과 동단위사업으로 이원화 운영
 - **동단위사업 (약 6억원)**: 한 개동에 해당하고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
 - **구단위사업 (약 6억원)**: 두 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한 개동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 - ※ 동별 3천만원 이내, 최종결정액금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② 주민제안: 동네회의, 일반(상시)제안

- <u>동네회의</u>: 동별 인적네트워크, 공간네트워크 회의에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 제안
- 일반(상시)제안: 소규모 동네회의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은인터넷, 우편, 이메일로 신청
 - ※ 수시로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후 동단위·구단위 사업 분류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일정에 따라 진행

③ 주민심사 (주민총회 상정)

- 동단위사업: 마을심사단에서 결정
 - 심사대상: 마을담당관에서 분류한 동단위사업 일체
 - 성립요건: 마을심사단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심사대상건수가 4건 이상일 때 개회할 수 있음
 - 심사결정: 마을심사단은 총회에 상정할 사업이 3건 이상 5건 이내일 경우에만 최종 심사 결정 가능
 - 심사절차: 심사기준표*에 의한 심사 (붙임 #6)

○ 구단위사업: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

- 대 상: 마을담당관에서 분류한 구단위사업 일체

- 방 법: 4개 분과로 분류, 분과별 현장심사 후 분과별 상정사업 결정

- 기 준: '사업비 비중'으로 결정 (각 분과별 사업비 + 전체사업비)

- 분과별 상정 한도액: 최종 결정금액의 1.5배

◆ 결정 예시				
구 분	도시·환경	복지·경제	교육·문화	건강·안전
적격사업 (20억)	8억(40%)	3억(15%)	4억(20%)	5억(25%)
상정실링 (9억)	3억 6천만	1억3천5백	1억 8천	2억2천5백
결정금액 (6억)		<6'	억>	

- ※ 제안사업 규모에 따라 상정실링액, 최종 결정금액 변동 가능
- ※ 총회는 4개 분과별·정책제안<u>제 구분 없이</u> 6억 범위 내 투표

④ 주민결정(주민참여예산 총회)

○ 투표수: 총 5표 (구단위 3표, 동단위 2표) ※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○ 투표방법: M보팅에서 구단위·동단위 동시 투표

○ 득표 동점사업 처리기준

-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작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
- 분과당 결정실링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결정실링액을 기준으로 초 과된 사업비가 50% 미만은 선정하고, 50% 이상은 제외
-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

○ 허용기준

- 동단위사업: 동별 결정금액의 +3% 이내

- 구단위사업: 6억원 기준으로 <u>동단위사업 결정 후 잔여 금액은</u> 구단위에 추가하고 부족 금액은 그만큼 감액

5 주민총회 참여인원 목표: 15,000명 이상 참여

○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인구의 3.75%

6 운영절차

○ 주민참여예산 (12개동)



○ 마을계획 개최(8개동):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

세부 추진계획

1.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

1 운영개요

VI

- 의의: "참여의 재미를 부여하자!", "참여하면 더 잘 참여한다!"
 - (**효능감 제공**)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마을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하여 실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능감을 제공하고자 함
 - (참여에서 자치로)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, 그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
 - (상시제안 접수) 참신하고 우수한 사업 구정에 반영
- 제안창구: 동네회의, 일반(상시)제안
- 접수기간
 - 동네회의: 2016. 5. 1. ~ 6. 30. (집중접수)
 - 일반제안: 연중 접수하나 집중접수 기간이 지나면 다음연도로 이월

2 동네회의 개최

○ 주 관: 주민참여예산 담당 및 마을코디

○ 역 할: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동네회의에서 주민 스스로 찾기

- 3~5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인 "자발적 결사체"의 활발한 활동이 마을민주주의의 기반 조성에 핵심임

○ 구 성: 공간네트워크(통단위 5명 이상), 인적네트워크(3명 이상)

○ 요 건: 3명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출

③ 일반제안 접수

○ 기 간: 5<u>. 1. ~ 6. 30. (집중접수)</u>

○ 주 체: 마을담당관

목 적: 생업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동네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함

○ 방 법: 인터넷(구청일괄), 방문 접수(구청·동), 우편, 팩스 등

○ 역 할

- 마을담당관 : 공고, 홍보, 인터넷 접수 총괄

- 동마을복지센터 : 방문 접수분 제출. 제안서 작성 행정지원

○ 요 건: 5명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출

○ 유의사항

- (서류접수) 동단위, 구단위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접수

- (행정지원) 제안서 작성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행정 지원

- (서류검토, 보완요구) 필수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일정기가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안접수 반려

2.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

1 운영방향

- 사업의 시급성, 적절성 등을 주민 입장에서 검토
- 현장방문 후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총회 상정사업 결정
- ② 제안사업의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: 사업부서
 - ○개 요

- 기 간: 2016. 7. 11. ~ 7. 22.

- 역 할 : 현장 확인, 법령 예산 등 사업성 검토, 사업 구체화



○ 세부내용

- (사업부서 배부) 마을담당관은 접수된 사업을 분류하여 각 부서에 전달
- (현장확인) 사업부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법률·예산·민원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
- (사업 구체화) 사업부서는 사업의 규모, 설계의 적정성,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면 제안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
- ※ 사업을 검토한 부서는 최종 선정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직접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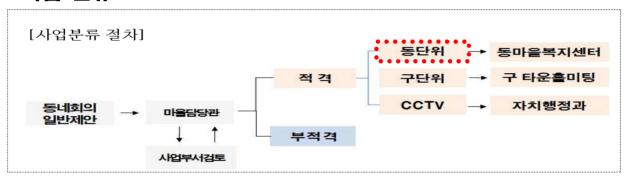
○ 부적격 심사기준

- 가. 제반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
- 나.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
 -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은 가능
- 다.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
 -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,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
- 라.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
 - 예) 매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운영비를 신청하는 경우
- 마. CCTV 설치 요구 사업
 -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참여예산 사업으로 포함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통보
- 바.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제안 (민간이전 불가)
 -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모사업과 달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특정 단체에 예산에 지원되지 않음

○ 주의사항

- (제반사항 검토) 사업의 필요성, 시급성, 공공성, 수혜대상, 사업범위, 규모, 산출내역,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(협의진행) 타부서와 협의,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필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각기 해당 부서에서 가능·불가능한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할 것
- (정확한 정보 제공) 사업부서는 주민심사과정에서 사업심의시 효율성·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사업을 충분히 검토

○ 사업 분류



③ 동단위사업 심사: 마을심사단

○ 역 할: 주민총회에 상정할 동단위사업 결정 (우선순위 포함)

○ 임 기: 1년, 1회에 한하여 연임

○ 정 원: 동별 20명 이상 (제안자 별도)

○ 심사대상: 마을담당관에서 송부한 동단위사업 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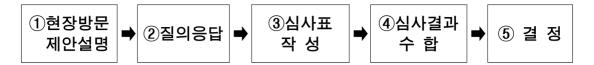
○ 심사기간: 16. 8. 8. ~ 8. 19. (기간내 실시)

○ 성립요건: 재적 과반수 위원이 출석하고 심사 대상 건수가 <u>4건 이상</u> ※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준용, 위촉한 날로부터 시작

○ 결정요건: 총회에 상정할 사업이 <u>3건 이상 5건 이내일 경우</u>에만 심사결정 가능

○ 심사방법: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(심사점수로 판단)

○ 심사절차



- (제안설명) 제안설명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제안자가 마을심사단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제안사업 설명

판단 기준

- ◆ 제안자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제안설명 기회 보장
- ◆ 단순 토목공사(계단·도로보수, 핸드레일 설치 등) 제안설명 제외
- ◆ 사업구역의 위치, 행정데이터, 기타 현황 등 대체 설명 가능한 사업일 경우 제외
- (질의·응답) 마을심사단은 사업제안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
- (심사표작성)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
- (심사결과 수합) 마을코디는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결과 공개
- (찬반토론 및 결정) 5순위가 동일점수로 2개 이상 사업이 있으면 위원들간 토론 후 거수에 의하여 결정함
 - ※ 5순위가 넘어간 사업은 마을총회에 상정하지 않음
- 주민자치위원회 추인: ~주민참여예산총회 개최 20일 전
- 동별실링액 = 심사대상 총액의 80% (동별 차등)
 - ◆ 총회상정 총액이 3,750만원 → 실링액 3000만원
 - ◆ 총회상정 총액이 2,500만원 → 실링액 2000만원
 - ◆ 총회상정 총액이 2,000만원 → 실링액 1600만원
 - ◆ 총회상정 총액이 1.500만원 → 실링액 1200만원
 - ◆ 총회상정 총액이 2,560만원 → 실링액 2048만원 → 최종 2100만원
 - ◆ 총회상정 총액이 1,940만원 → 실링액 1522만원 → 최종 1500만원
 - ◆ 총회상정 총액이 2,256만원 → 실링액 1804.8만원 →최종 1800만원 ※ 십만원 이하 아래에서 반올림

④ 구단위사업 심사: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- 역 할: 주민총회에 상정할 구단위사업 결정 (우선순위 포함)
- 절 차

 분과별 현장확인 결과 보고
 →
 사업부서 검토의견 관련 토론

 →
 사업비 결정(조정)
 →
 투표 대상사업 결정
 →
 투표 실시

 →
 총회상정사업 결정

○ 일 정

- 현장확인 및 상정결정 안내를 위한 전체회의 : 16. 8. 9.(화)
- 분과별 현장 방문 : 16. 8. 10.(수) ∼ 8. 16.(화)
- 현장 방문 사업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: 16. 8. 16. (화)
-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 : <u>16. 8. 19.(금)</u>
- 대 상: 마을담당관에서 분류한 구단위사업 일체
- 방 법: 4개 분과로 분류, 분과별 현장심사 후 분과별 상정사업 결정
 - 기 준: '사업비 비중'으로 결정 (각 분과별 사업비 ÷ 전체사업비)
- 분과별 상정 한도액: 최종 결정금액의 1.5배 (서울시 기준)

	결정 예시				
	구 분	도시·환경	복지·경제	교육·문화	건강·안전
_	적격사업 (20억)	8억(40%)	3억(15%)	4억(20%)	5억(25%)
	상정실링 (9억)	3억 6천만	1억3천5백	1억 8천	2억2천5백
	결정금액 (6억)	<6억>			

- ※ 제안사업 규모에 따라 상정실링액, 최종 결정금액 변동 가능
- ※ 총회는 <u>4개 분과별·정책제안제 구분 없이</u> 6억 범위 내 투표

3. 주민참여예산 총회 (주민투표)

1 운영 방향

- 동단위·구단위 사업 동시 투표 (동단위 2표. 구단위 3표)
-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

2 세부 내용

- 투표기간: 2016. 9. 8.(목) ~ 9. 27.(화)
- 투표방법: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M보팅 투표
- 투표대상: 동단위사업, 구단위사업(정책제안제 포함) 모두
- 사업선정: 결정 한도액내 득표 순위로 사업 선정
- 투 표 수: 5표 (동단위 2표. 구단위 3표)
 - 동단위사업 투표대상: 5건 이내 조정
 - 구단위사업 투표대상: 20건 이내로 가급적 조정

③ 주요 변경사항

- 구단위사업 분과위 30% 이상 찬성 규칙 적용
 - 2015년은 분과당 상정실링액 기준으로 사업내용이 좋다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상정실링액의 여유가 있어 그냥 총회에 상정되었으나.
 - 2016년부터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30%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한 사업은 상정실링액 한도가 넘지 않아도 총회에 상정하지 않음
 - ⇒ 총회에 너무 많은 사업이 상정될 경우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
- 동단위·구단위 투표 동시 실시
 - 9. 8. ~ 9. 27. : 주민참여예산총회 주간으로 전동 동시 실시

4. 타운홀미팅 [최종 결정]

1 운영 방향

- 현장·인터넷·모바일투표 방식 도입 및 투표기간의 연장으로 주민참여율 제고
-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
- 동단위사업 결정(9.27.) 후 구단위 사업의 최종 선정은 타운 홀미팅(9.28.)에서 확정
 - ⇒ 사업선정: 온라인투표(50%) + 타운홀미팅 현장 투표(50%)

2 추진 내용

○ 일 시: 2016. 9. 28.(수) 15:00 ~ 18:00

○ 장 소: 구청 4층 성북아트홀

○ 참 가 자: 100명 (참여예산위원, 동마을심사단, 무작위추출)

- 무작위추출로 50명 선발

-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, 동마을심사단 20명 선정

○ 진행내용

세 션	주요 내용	비고		
식 전	■ 사진전시회, 사업 안내 판넬, 배너 전시			
개 회	■ 개회사 (주민참여예산위원장)			
기 외	■ 축 사 (구청장)			
안 내	■ 진행과정, 기기 사용, 투표 방법 안내 진행자			
제안설명	■ 토론과정			
│ ↓ │ 토 론	① 제안자 사업 설명			
\	② 질의, 토론			
결 정	③ 제안설명, 토론 후 투표			
공 지	공 지 ■ 최종 결정 내역 화면 게시			
소감발표	'표 ■ 체험 소감 공유 (타운홀 미팅 참가자)			
폐 회	■ 총 평 (구청장)			

③ 주요 변경 사항

- 투표 결과 공표 프로그램 제작
 - 투표 종료 후 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공표 프로그램 사전 제작
 - ⇒ 참여의 재미를 부여하고 즉시 공표하여 정책신뢰감 부여
-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 사항 확정
 - 동단위사업을 먼저 결정(9.28.)한 후 구단위사업은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(9.29.)

5.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

O 목 적

- 참여예산은 주민 제안사업의 반영뿐 아니라,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실현
- 선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못지않게 선정 이후의 엄격한 관리 중요
- 대상사업: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57개 사업
- 모니터링단 구성: 주민참여예산위원
 - 모니터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2~3명 전담제 운영
 - 참여예산위원 사전설명 시 사업모니터링 커리큘럼 추가하여 교육 실시

○ 모니터링 실시

- 기 간: 상·하반기 각 1회 모니터링 실시(5월, 9월)
- 내 용: 주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, 절차의 중복, 관련기관간 협의 미비로 일부 공정 중복 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또는 예산절감 가능 여부 모니터링
- 협 조: 사업주관부서는 모니터링요원이 요청하는 사업계획,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협조
- 방 법: 사업현장, 사업부서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, 예산집행 상황 점검

○ 사업부서 관리카드 작성 제출: <u>분기별 1회</u>

○ 주요 확인사항

- (집행 타당성) 당초 제안내용에 일치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
- (사업 효과성) 지역주민의 만족도, 민원발생 사항 등
- (예산 적절성) 예산집행의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집행 내역 확인

○ 모니터링 결과 조치

- 분과위 위원별로(현장확인 조별) 예산낭비, 절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하여 마을담당관 제출
- 모니터링 결과는 현장확인 위원이 "참여예산 홈페이지"에 접속하여 해 당사업에 "모니터링보고서"로 첨부하여 등록
- -마을담당관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업 주관 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

6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
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※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기 수립한 마을담당관-9000호에 의함

○ 임원진 구성

- 위원장·부위원장: 총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
-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: 위원장 회의 진행 하에 선정

○ 회의 운영

- 개최시기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,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
- 개의·의결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사전공유 : 회의개최 1주 전 안건 및 회의자료 전달
- 회의공개 :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결과 공개

○ 운영 원칙

-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
-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
- 정치적·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
-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

② 전체 위원회(전체회의) 운영

- 개최횟수 : 연 5회 내외
- 주요기능
 -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및 방법 모색
 -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출사업 선정 논의
 -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 등
 -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

③ 분과위원회(분과회의) 운영

- 분과구성 : 4개 분과(건강안전, 교육문화, 복지경제, 도시환경)
- 회의소집 및 의결
 - 회의소집 : 분과위원장이 필요시, 총회 요구 시 소집
 - 의 결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- 개최횟수 : 연 6회 내외
- 주요기능
 - 분과위원회별 자체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의제 발굴
 - 일반제안, 지역(동네)회의,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부서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총회 상정사업 선정
 -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

7. 교육 및 홍보

□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

○ 참가대상 : 일반주민, 주민참여예산위원

○ 교육장소 : 구청 4층 성북아트홀

○ 소요예산 : 10,000천원

1) 기본과정

○ 운영기간: 1.22.~28. / 2.18.~25. 19시~21시 / 2주 3회

○ 참가대상: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

○ 운영방법: 전문가 강의 및 모둠활동 등

2) 심화과정

○ 운영기간: 2016년 4월경

○ 참가대상: 주민참여예산위원

○ 운영방법: 전문가 강의 및 토론, 모둠활동 등

②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

○ 시 기: 2016. 4월, 10월

○ 대 상: 주민참여예산위원

○ 내 용: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, 주민참여예산제

운영 평가 및 피드백

③ 주민참여예산 홍보

○ 월별 홍보 계획

월 별	홍보내용 홍보방법		
1월	▶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생 모집	▶ 구홈페이지·성북소리 게재	
2월	▶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		
001 501	▶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홍보	▶구 웹진, SNS 홍보	
3월~5월	▶동네회의(지역회의) 운영 홍보	▶포스터 게재, 전단지 배포	
6월 ~7월	▶동별 마을심사단 모집 홍보	▶동 직능단체 회의 홍보,	
8월 ~9월	▶주민참여예산 총회 홍보	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	

8. 향후 추진 일정

	구 분	일 정	내 용	비고
<u></u> 1주	민참여예산위원회 구 성	3 /		
	사 업 제 안	5. 1. ~ 6. 30.	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(성북구·서울시)	
2 주	사 업 검 토	7.11.~ 7. 22.	부서 검토 및 사업구체화	
ㅜ 민	피 드 백 (이의신청)	7.25.~ 7. 29.	부서검토결과 피드백(이의신청)	
₹L	사 업 분 류	8. 1. ~ 8. 5.	사업분류・ 조정기간 (마을담당관)	
참 여	사 업 심 사	8. 8. ~ 8. 19.	총회상정사업 결정 (동단위)마을심사단 (구단위)주민참여예산위원회	
예	주 민 총 회 홍 보 자 료	8. 22. ~ 8. 31.	동단위·구단위 주민참여예산총회 홍보 준비	
·	온라인투표	9. 4. ~ 9. 6.	M보팅 프로그램 셋팅, 투표 시험	
산	준 비	9. 7.	M보팅 최종 예비 모의시험	
제	온라인투표	9. 8. ~ 9. 27.	온라인투표 실시	
		9. 27.	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과 공고	
운	디오호리티	8. 22. ~ 8. 31.	홍보 준비, 타운홀미팅 책자 만들기	
영	타운홀미팅 준 비	9. 1. ~ 9. 15.	타운홀미팅 참가자 모집(무작위추출)	
0	Ŀ '	~9. 25.	타운홀미팅 최종발표 프로그램 제작완료	
	디오하미디	9. 28.	타운홀미팅 실시, 최종 결과 발표	
	타운홀미팅	9. 29.	최종 결과 공고	
3	예 산 편 성	~10. 30.	부서 예산 편성 확인, 구의회 제출	•••••
•••••	••••••	~ 3.31	사업시행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	•••••
4	4 모니터링	~6.30	사업관리카드 제출 (예산집행현황)	
	실 시	~9.30	사업관리카드 및 진행상황 파악	
•••••	•••••	~11.30	현장점검, 최종 진행상황 모니터링	•••••
	5 평 가	11월 ~ 12월	제도 개선 사항 의견 수렴, 설문조사 실시	

Ⅷ 행정 사항

□ 부서별 협조사항

주 요 내 용			협조	부서		
동네회의 운영 및 주민제안사업 제출 (5~6월)	운	심사단 영 3월)		주민총회 행사 협조 (9월)	전	F/O
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설명서 작성 (5~6월)			토의견	원회 회의 참석 및 제공 등 ~8월)	사 업	부 서
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, 행사 동영상 촬영, 온라인 투표 협조 (연중)				홍보딩	남당관	

- ②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별도 제작 배부
 -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변경사항 직원 교육 실시 2016. 4월
 - 매뉴얼 제작· 배부 2016. 4월
- ③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계획 별도 수립 : 6월 한
- ④ M보팅 사용 환경 서울시 정보기획관과 협의: 6월 한
- 붙 임: 1.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
 - 2. 사업부서 검토서식 1부
 - 3. 부서검토의견 체크리스트 1부
 - 4. 마을심사단 심사기준표 1부
 - 5.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서식 1부
 - 6. 관리카드 서식 1부. 끝.

〈붙임 1〉주민 제안사업 신청서

	주민 제안시	나업 신청	l 서
◈ 구 분	□ 일반제안	□ 주제공	모 (아동·청소년)
◈ 제안 대표	자 인적사항		
성명(단체명)	주 소	<u> </u>	연 락 처
◈ 제안사업			
사 업 명			
사업위치			
제안사업 내 용			
필 요 성 기대효과			
소요예산			

◆ 사 업 명 :

사 업 위 치 도
현 황 사 진

※ Ђ	※ 제안사업 동의자 서명란						
_ 아	□ 모든 사업은 주민 5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. □ 아동·청소년 분야 주제공모사업의 경우, 어느 학교관계자 혹은 어느 지역주민임을 명시하여 주세요						
연번	이 름	거 주 동 (학교관계자, 지역주민)	서 명				

〈붙임 2〉사업부서 검토 서식

부서 검토 의견

♦ 제	안자	No.									
성	명						전	화			
주	소						E – m a	. i l			
◆ 주	민 제안	·사업 내용									
사 업	명		소					OC	O백만원		
위	치										
제 안 <i>/</i> 내	사업 용										
 제 안 ^결	취지										
◆ 사	·업부서	검토의견									
사입	걸개 <i>요</i>										
소오	요예산				백단	만원	사업기	l간			
	조례 등 촉여부	해 당 해당없음	()	*	저결	투사 :	유 :				
심계	·적격 나기준 당여부	해 당() ※ 부적격 <i>/</i> 해당없음()				나유 :					
(타라	성 평 가 성,시급성, ,수혜범위 등)									
종합침	검토결과		적	정 ()			부적정 ()	
검 토 기 관	기관명				검토	확	인자(부시	- 장)			(서명)
기 관	부서명				차	작	성자 : 팀	장	담당	(23))

□ 현황도 : 필요시 첨투	=
----------------	---

사	업	위	치	도		
현	황		사	진		

〈서식 3〉부서 검토 의견 체크리스트

부서 검토의견 체크리스트

검 토 사 항	체 크
1.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2. 제반 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였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3.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4.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산출하였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5. 사업성평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였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6.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합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7.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 □ 해당없음
8. 종합검토결과 부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9. 팀장, 과장의 검토를 받았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10. 전체적으로 주민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?	□ 그렇다 □ 아니다

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표

\bigcirc	사어며		
	기비증	•	

○ 심사자 : _____

〈 평가표 〉

, ,		I							
항 목	 		배점						
8 7	당기시 <u>표</u>		1	2	3	4	5		점수
필요성	이 사업은 주민편의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	
시급성	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	
공공성	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	
사업 범위	이 사업은 성북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? (특정지역 수혜 여부)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	
수혜 대상	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	
삶의질	이 사업은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	
사업비 규모	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? (사업비 과다 여부)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	
	계								

〈붙임 5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

- 2016년 주민참여예산 -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

	분과	며	•	Ω	브과
\Box	ᄑ	0	•	\mathbf{O}	エー

대상사업		참여위원			
사 업	명		위 원 명		
위	치		현장조사 일 시		
현장2 의	조사 견	(사업계획 대비 진행여부, 하자 발생 기타의견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견·			

〈붙임 6〉 사업집행 관리카드 서식

사 업 명:

사업개요

(부서: 0000, 담당자: 000, 연락처: 0000)

○ 위 치 : 동소문로32길4~8

○ 사업기간 : 2016.3 ~ 12

○ 사업비: 50,000천원

○ 사업내용 : 도로 급경사 조정

□ 사업필요성

 \bigcirc

 \bigcirc

□ 추진실적 (예시)

(단위: 천원)

기 간	추진내용	집행액	비고
2016. 3. 03.	사업추진 계획 수립	_	
2016. 4. 17.	사업시행 계획 수립	_	
2016. 4. 22.	휀스 조달 구매	_	

□ 사업효과

○ 경사로를 조정하여 주민에게 교통편의 및 보행편의 제공

 \bigcirc

현장사진	
시 행전	시 행 후 (시행중)
□ 문제점 및 대책○□ 향후계획	
\circ	

주민 면담록

주민이름	일시	방법	내 용(간략하게)
000	16.•.••	방문	주민참여예산위원 방문, 간단한 질의응답 등